

교 회 규 약

기 독 교 함께하는교회
한국침례회

서 문

교회는 예수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이 일하시는 터전으로 함께하는교회도 그 한 부분을 담당하고자 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하는교회에 맡겨주신 독특한 비전과 사명을 인식하고 이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교회를 설립하고 성경의 원리에 따라 운영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제정 공포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교회는 기독교한국침례회 함께하는교회라 칭한다. 함께하는교회는 각 지역에 네트워크교회를 둘 수 있으며 네트워크교회와 함께하는교회를 통틀어 '함께하는교회'라고 한다.

제 2 조 (위 치)

함께하는교회의 대표주소는 대전시 유성구 동서대로 130 번지로 한다.

제 3 조 (사 명)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헌신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한다.

제 4 조 (목적과 비전)

함께하는교회는 예배와 선교, 구제, 교육 및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일을 목적으로 삼는다. 특히, 우리는 함께 모이고, 함께 자라가고, 함께 나누어 주며, 함께 나아간다.

제 2 장 정치의 원리

제 5 조 (근 거)

함께하는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제 6 조 (복음적 분업)

모든 교인은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에 따라 각기 하나님의 나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의 지위는 동등하며 서로의 맡은 바를 존중해야 한다.

제 3 장 교인 및 사역자

제 7 조 (교인)

1. 자격: 함께하는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면 새가족 교육을 통해 교회의 비전, 운영 등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받은 다음 등록하여 교인이 된다.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출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2. 책임: 교인은 정기에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며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갖는다.
3. 권리: 교인은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8 조(사역자)

1. 함께하는교회 사역자는 대표목사, 전임사역자, 비전임사역자, 직원으로 한다.

제 9 조(대표목사)

1. 대표목사는 함께하는교회 목회활동의 대표 역할을 맡는다.
2. 대표목사는 목양위원회에서 선출한 청빙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공동체회의의 결의로 청빙된다.
3. 대표목사 초빙시의 임기는 5년으로하며 연임할 수 있다. 연임시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4. 대표목사의 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초빙 조건은 청빙위원회의 제안으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5. 대표목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공동체회의의 결의로 그 직을 면한다.
6. 대표 목사의 정년은 만 70 세까지로 한다.

제 10 조 (전임사역자)

1. 전임사역자는 목회활동과 교회 운영 분야 등에 전임으로 사역하는 대표목사 이외의 목사와 전도사 등을 지칭한다.
2. 전임사역자는 목양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추인하며 대표목사의 임명으로 초빙한다.
3. 전임사역자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운영위원회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제 11 조(비전임사역자)

1. 비전임사역자는 비전임으로 사역하는 협동목사, 협동설교자, 전도사 등을 지칭한다.
2. 비전임사역자는 목양위원회가 결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추인하며 대표목사의 임명으로 초빙한다.

제 12 조 (직원)

직원의 고용에 관한 사항은 목양위원회가 결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추인하며 대표목사가 채용한다.

제 13 조(감사)

1. 감사는 교회 운영전반에 관한 점검과 재정에 관한 감사활동을 한다.
2. 감사는 2명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공동체 회의에서 결산감사 결과를 연 1회 보고해야 한다.
4.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1/10 또는 교인 10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감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 14 조(공동체회의)

1. 기능 : 교회의 최고사결정기구로서 교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승인한다.
2. 구성
 - ① 공동체회의 회원은 만 19 세 이상의 등록교인으로 한다.
 - ② 공동체회의 의장은 대표목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대표목사가 지정할 수 있다. 대표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이 대행한다.
 - ③ 공동체회의의 서기는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1 인을 공동체회의 의장이 지명한다.
3. 업무
 - ① 대표목사의 선임, 해임
 - ② 대표목사의 연임
 - ③ 예산과 결산에 대한 승인
 - ④ 감사의 보고사항 확인
 - ⑤ 교회정관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승인
 - ⑥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한 재심
 - ⑦ 교단탈퇴에 관한 사항
 - ⑧ 교회 재산의 취득과 처분
 - ⑨ 기타 공동체회의가 정하는 안건
4. 소집 및 회기
 - ① 공동체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 ② 정기회는 회계년도 개시 후 2 개월 안에 개최하며 의장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14 일 이전에 교회광고 등의 방법으로 공고한다.
 - ③ 임시회는 의장, 운영위원회, 혹은 등록교인 100 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0 일 이내에 소집하며, 의장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14 일 이전에 교회광고 등의 방법으로 공고한다.
5. 의결방법
 - ① 위 제 3 항의 규정 중 제 1 호와 제 5 호 및 제 8 호에 관한 규정은 공동체회의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 8 호 재산에 대한 결의는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에 대하여 일정금액 이상만 공동체회의에서 의결하며 일정금액의 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② 위 제 3 항의 규정 중 제 2 호, 제 6 호, 제 7 호에 관한 규정은 공동체회의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 제 3 항의 규정 중 나머지 안건은 교회광고 등의 방법으로 14 일 동안 공고한 후 회의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의결한다.

제 15 조(목양위원회)

1. 기능

목양위원회는 교회의 목적과 비전에 따라 교회운영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인사, 영적 양육, 치리 및 종교적 교리에 따른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논의하고 결정한다.

2. 구성

① 목양위원회는 대표목사, 운영위원장, 재정위원장을 포함한 총 9 명으로 하며, 목양위원의 구성은 대표목사가 결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추인한다.

② 목양위원장은 대표목사로 한다.

3. 임기

목양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업무

① 교회의 중장기 계획과 전략 결정안 심의 및 결의

② 교회의 치리를 포함한 인사, 교육, 양육, 소그룹, 상담에 관한 사항

③ 기타 공동체회의가 위임한 사항

④ 대표목사 유고 및 결원 시 대표목사의 임무대행

5. 소집 및 회기: 목양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목양위원 3 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목양위원장은 목양위원회를 7 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목양위원장이 목양위원회를 정해진 기간 안에 소집하지 않는 경우 목양위원 중 1 인이 목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6. 의결방법 : 목양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인원 2/3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 16 조(운영위원회)

1. 기능: 운영위원회는 집행기구로서, 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교인 중에 선출된 리더를 포함하여, 사역위원, 목양위원, 전임사역자, 재정위원 등 총 30 명으로 구성한다. 30 명의 구성에 대해서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대표목사가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하며 임기는 2 년으로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임기 : 운영위원 중 리더, 사역위원, 목양위원, 재정위원은 그 직을 유지하는 동안 운영위원의 지위를 갖는다.

4. 업무

① 교회의 정책적 사안 심의 및 의결

② 정관개정안의 발의 및 심의

③ 시행세칙 제정과 개정

④ 예산안과 결산안 심의

⑤ 교회운영(부서 포함)의 실무적 협의, 감독 및 조정

⑥ 기타 공동체회의가 위임한 사항

⑦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5. 소집 및 회기: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운영위원장, 감사 또는 운영위원 3 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장은 그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운영위원장이 기한 안에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감사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7 조(임시위원회)

1. 기능 : 일정한 기간 동안 특별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임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구성 : 임시위원은 목양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0 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3. 임시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진한다.

제 18 조(사역위원회)

1. 기능: 사역위원회는 함께하는교회의 모이기, 자라가기, 나누기, 나아가기 등 사역의 연간 활동사항을 심의하고 사업방향을 조율한다.
2. 구성: 사역위원회는 모이기, 자라가기, 나누기, 나아가기의 각 사역위원으로 구성한다.
3. 선출방법 및 임기 : 사역위원은 목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제 19 조(재정위원회)

1. 기능 : 재정위원회는 교회의 재정을 총괄 운영한다.
2. 구성
재정위원과 재정위원장은 목양위원회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재정위원장의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업무
 - ① 교회 재정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회계와 결산 관리
 - ② 각 위원회 및 사역의 연간 예산안의 사전검토 및 심의

제 20 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본 정관에서 정한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군 입대, 유학, 질병 등"으로 회의 참석이 객관적으로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구성원은 재적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 21 조(의결방식)

1. 본 정관에서 규정한 의결은 교인 혹은 구성원이 참석하여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각종 직임의 투표에서 원칙적으로 후보자의 추천 및 의견표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3. 각 의결에는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다.

제 5 장 재정 원칙과 재산관리

제 22 조(재정 운영목적과 원칙)

1. 함께 공동체의 재정은 교회의 비전, 사명 및 가치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목적에 맞게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함께하는교회의 재정은 교회의 비전, 사명 및 가치관에 따라 모이고, 자라가고, 나누고, 나아가는 사역과 각 교회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지원사역 그리고 특별재정 등에 사용하며, 부문별로 균형 있게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무실에 비치하여 함께하는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3 조(재정운영)

1. 교회의 재정은 재정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재정위원회는 기관 및 부서의 재정담당자들과 협력하여 교회의 재정을 총괄 운영한다.

제 24 조(재산의 취득 및 관리)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함께하는교회의 재산은 교인 총유의 것이므로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함께하는교회의 부동산 취득, 매도, 증여 등 재산의 처분행위는 공동체회의의 결의에 따른다.
3. 다만, 함께하는교회 건물의 임대차 등 관리행위와 일정기준 금액 이상의 비품 및 집기의 구입 및 폐기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규정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4. 모든 재산의 등기는 함께하는교회 명의이어야 하나, 운영상 또는 행정상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등기의 주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25 조(전임, 비전임사역자의 보수)

교회의 전임사역자 및 비전임사역자의 보수는 초빙 계약 시 정한 조건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6 장 권 징

제 26 조(권징의 과정)

1. 교인이 함께하는교회의 운영 또는 활동을 해한 다고 판단되는 경우 목양위원회는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교인을 권징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특정교인의 권징을 목양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제 27 조(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경고의 내용을 통지
2. 근신 :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3. 해직 : 직분의 박탈
4. 출교 : 교인으로서의 자격 박탈
5. 기타 목양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제 7 장 부 칙

제 28 조 (준 용)

본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29 조 (시행세칙)

이 정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 30 조 (효력)

이 정관은 공동체회의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서기 2018년 8월 12일
기독교한국침례회 함께하는교회

2009년 8월 5일 규약 제정 사무처리회 인준
2018년 8월 12일 개정안 사무처리회 인준